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. 10. 14 선고 2022가단5204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(변경 전:B)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9. 23.

판 결 선 고 2022. 10. 14.

주 문

1. 가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2. 5. 체결된 증여계약을 46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46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가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2. 25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D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21. 3. 3. 접수 제58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

판사 장윤미

별지